



펜타힐즈 더샵2차 입주자 모집공고

2015. 10. 15 (목요일)

펜타힐즈 더샵2차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10. 15(목)**입니다.(무주택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임.)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05.31)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제6항」규정의 개정(2015.02.27)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낮아졌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자지촉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이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 입주자지촉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규모에 청약 가능하며, 주택규모변경 기간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이 폐지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60㎡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산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이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2012년 9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 제2호 및 경산시 고시 제2015-10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5년 7월 17일)**가 경산시 90일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층이라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택은 77㎡, 84㎡A, 108㎡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84㎡B형은 건물주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거 건설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적용내용 :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건축과 - 12935호(2015.10.1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505 외 18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35층 4개동 총 791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68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일반 68세대) 237세대 포함]

■ **대지면적 : 33,284㎡ [부대복리시설(단지내 상가 등)대지면적이 포함된 면적임]**

■ **공급대상 및 면적**

(면적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비율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민영 주택	2015001229-01	77.9680	77.9680	27.0349	105.0029	41.1339	146.1368	37.6538	240	2
	2015001229-02	84.9515A	84.9515	28.7721	113.7236	44.8181	158.5417	41.0264	310	4
	2015001229-03	84.9492B	84.9492	29.7131	114.6623	44.8169	159.4792	41.0253	138	2
	2015001229-04	108.9242	108.9242	36.4890	145.4132	57.4655	202.8787	52.6037	103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 VAT포함)

주택형별 (세대수)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가격			공급대금납부방법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계약시	2015.12.03	2016.05.25	2016.11.25	2017.04.25	2017.08.25	2017.12.26	2018.04.25			
77 (240)	201동(1호,6호) 202동(1호,6호) 203동(1호) 204동(1호,6호)	1층	2	77,450	169,750	247,20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49,440	
		2층	7	77,450	180,950	258,40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51,680
		3~4층	14	77,450	189,350	266,80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26,680	53,360
		5~9층	35	77,450	194,950	272,40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27,240	54,480
		10~19층	70	77,450	197,750	275,20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55,040
		20~35층	112	77,450	200,550	278,0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55,600
84A (310)	201동(2호,4호,5호) 202동(2호,3호,5호) 204동(2호,4호,5호)	1층	4	84,390	190,810	275,20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27,520	55,040	
		2층	9	84,390	202,910	287,30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28,730	57,460
		3~4층	18	84,390	212,010	296,40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29,640	59,280
		5~9층	45	84,390	218,110	302,50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30,250	60,500
		10~19층	90	84,390	221,110	305,50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30,550	61,100
		20~35층	144	84,390	224,110	308,50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30,850	61,700
84B (138)	201동(3호) 202동(4호) 204동(3호)	1층	1	84,380	181,020	265,400	26,540	26,540	26,540	26,540	26,540	26,540	26,540	26,540	26,540	53,080	
		2층	3	84,380	193,220	277,600	27,760	27,760	27,760	27,760	27,760	27,760	27,760	27,760	27,760	55,520	
		3~4층	6	84,380	202,420	286,8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57,360	
		5~9층	15	84,380	208,520	292,900	29,290	29,290	29,290	29,290	29,290	29,290	29,290	29,290	29,290	58,580	
		10~19층	30	84,380	211,520	295,900	29,590	29,590	29,590	29,590	29,590	29,590	29,590	29,590	29,590	59,180	
		20~35층	48	84,380	214,620	299,0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29,900	59,800	
	203동(4호)	1층	1	84,380	172,020	256,400	25,640	25,640	25,640	25,640	25,640	25,640	25,640	25,640	25,640	51,280	
		2층	1	84,380	184,220	268,600	26,860	26,860	26,860	26,860	26,860	26,860	26,860	26,860	26,860	53,720	
		3~4층	2	84,380	193,320	277,700	27,770	27,770	27,770	27,770	27,770	27,770	27,770	27,770	27,770	55,540	
		5~9층	5	84,380	199,420	283,800	28,380	28,380	28,380	28,380	28,380	28,380	28,380	28,380	28,380	56,760	
		10~19층	10	84,380	202,420	286,8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57,360	
		20~35층	16	84,380	205,520	289,900	28,990	28,990	28,990	28,990	28,990	28,990	28,990	28,990	28,990	57,980	
108 (103)	203동(2호,3호)	2층	2	108,200	253,500	361,700	36,170	36,170	36,170	36,170	36,170	36,170	36,170	36,170	36,170	72,340	
		3~4층	4	108,200	265,100	373,300	37,330	37,330	37,330	37,330	37,330	37,330	37,330	37,330	37,330	74,660	
		5~9층	10	108,200	272,800	381,0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76,200	
		10~19층	20	108,200	276,700	384,900	38,490	38,490	38,490	38,490	38,490	38,490	38,490	38,490	38,490	76,980	
		20~35층	32	108,200	280,500	388,700	38,870	38,870	38,870	38,870	38,870	38,870	38,870	38,870	38,870	77,740	
	203동(5호)	1층	1	108,200	226,500	334,700	33,470	33,470	33,470	33,470	33,470	33,470	33,470	33,470	33,470	66,940	
		2층	1	108,200	242,000	350,20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35,020	70,040	
		3~4층	2	108,200	253,600	361,800	36,180	36,180	36,180	36,180	36,180	36,180	36,180	36,180	36,180	72,360	
		5~9층	5	108,200	261,300	369,500	36,950	36,950	36,950	36,950	36,950	36,950	36,950	36,950	36,950	73,900	
		10~19층	10	108,200	265,200	373,400	37,340	37,340	37,340	37,340	37,340	37,340	37,340	37,340	37,340	74,680	
20~35층	16	108,200	269,100	377,300	37,730	37,730	37,730	37,730	37,730	37,730	37,730	37,730	37,730	75,460			

■ 주택형 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약식표기	77	84A	84B	10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들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일조등 - 203동 4호,5호)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되었으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층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 제외)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적정리(대지확정측량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지면적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앞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에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정별 적용기준)등을 신청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7일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1) **특별공급 공급일정**

구분	일자	신청시간	지역별 접수 대상	당첨자 선정	장소
1차	2015. 10. 20(화)	10:00~16:00	○ 당해지역(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자 (2015년 7월 17일) (기관추천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노부모양특별공급) ※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1순위 신청자만 해당	2015. 10. 21(수) 16:00	당사 건본주택
2차	2015. 10. 21(수)	10:00~14:00	○ 기타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당해지역 90일 미만 거주자 ※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1,2순위 및 경산시에 거주하는 2순위 신청자 해당		

- ※ 특별공급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를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중 1차 접수(전주택형)마감시, 2차 접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단 일부주택형 미달시 해당 주택형만 접수신청 가능)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많아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4	31	13	10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24	31	13	-	6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9	4	3	23
기관추천 특별공급	24	31	13	-	68
합계	79	102	43	13	237

3) 특별공급 공통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에서 1명만 청약 신청 가능)으로 공급이 가능하고(2015.02.2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되며,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 항목 적용 배제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2015년 07월 17일)한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호 및 경산시 고시 제2015-10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는 제외함],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총액이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 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4) 특별공급 유의사항

- 다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 공급 받는 사례가 많아 특별공급의 대리 신청시 1인 1건만 대리신청 가능하며, 1인이 여러 명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및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 ①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②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③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④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계약세대 및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됩니다. 또한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1회 특별공급)로 관리하며, 해당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78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

주택형(전용면적/㎡)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계
세대수	24	31	13	10	78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 신청자와 다른 주소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2)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	-	-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며,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적용

(4),(5):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기준: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68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

주택형(전용면적/㎡)	77.9680㎡	84.9515A㎡	84.9492B㎡	계
세대수	24	31	13	68

1)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임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공급계약)이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임신중인 부부가 당첨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등과 관련된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사업주체가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유산·낙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불법 낙태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공급계약)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구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 2010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합니다.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및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2)선정방법

-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많은 자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자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선정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23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

주택형(전용면적/㎡)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계
세대수	7	9	4	3	23

1)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봅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 미적용)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2)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청약 가점제 적용하여 동점일 경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를 작성토록 합니다.(당사 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68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이내)

주택형(전용면적/㎡)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계
세대수	24	31	13	0	68

1)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또는 인증서를 받으신 분.
-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의 대상자중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특별공급 신청자
 - ② ①항을 제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공통서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표시(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양)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표시(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양)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2you.com에서 발급 • 단, 특별공급 대상자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본인 신청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인장서 또는 관련공부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양 입증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발급기준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분에 한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 입증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아래 소득입증서류 참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인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기본증명서		•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당사 견본주택에 위임장 서식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근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접수장소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 일반공급

1.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중복청약시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며,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하는 민영주택에 한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가 소명기간내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에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순위별 신청자격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이하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85㎡초과 : 추첨제 적용(100%) 	경산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15. 10. 22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청약통장가입자 www.ap2you.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일시: 2015. 10. 29. (목) ▶ 발표장소: 사업주체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thesharp.co.kr)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총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후 예치금액이 납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기간 6개월이 지난 가입자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예치금액을 입금시킬 경우 연체약정일 없이 바로 청약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시간 :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 및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 및 전화문의는 하지 않음.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 		2015. 10. 23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계좌 보유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신청금계좌 보유자 www.ap2you.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시간 : 08:00 ~ 17:30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 ※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가능 시간: 09:00 ~ 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만 가능, 2순위는 청약통장 취급은행이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3 제4항)

전용면적	경산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	대구광역시 거주자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

4. 청약예금 변경(전환)시 경과 기간 및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규모 변경을 원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5. 신청접수방법

- 1)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라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을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 하지 않습니다.)
 - 1순위
 - 2007. 9.1부터 시행된 청약가정제에 의하여 동일순위내인 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합니다.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정제 안내

1. 가정제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 청 자 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점 만점 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전용면적85㎡이하의 단독주택
 -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는 제외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주택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인터넷청약 신청방법(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청약접수 기간 중 은행 전산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한자(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 가입한자(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www.ap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청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통장 도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확인 가능하여야 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원(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본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양식은 은행청구에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순위 청약신청

접 수 장 소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국민은행 인터넷뱅킹(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www.ap2you.com) 	전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자는 청약신청시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금 이상 잔액 유지) 인터넷 청약시 주택청약 참가은행 : 국민, 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총16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청구청약: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청약은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 후 익영업일 2015.10.30 (금)부터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환불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인터넷 청약신청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은행청구 청약신청자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환불 (단, 청약자 본인의 접수은행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서류

구 분	청약신청금 환불시 구비서류
본인·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 신청금 환불용)가 첨부된 위임장 1부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임의하에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특별공급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상 경산시 9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5년 7월 17일)가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90일 미만 계속 거주 신청자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1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 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정당 당첨자중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별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 2015.10.29(목) ~ 2015.11.07(토)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 → 당첨자사실조회
ARS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 → 1 → 3)	• 전국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5#)
휴대폰 당첨자	방법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기간	• 2015.10.29.(목)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계약기간 : 2015.11.03.(화) ~ 2015.11.05.(목) [3일간, 시간:10:00 ~ 16:00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시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공지]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건본주택
-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509-910013-35904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예)201동 102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2010102홍길동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자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 및 금융비용등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부적격자가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변경은 대리은행의 승인 하에 대리은행 및 수탁자의 명의로 수분양자에게 통보하여야 가능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포함)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이전에 결혼한 경우) • 인감증명서 1부(용도:아파트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부(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자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1부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부적격통보를 받은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증빙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기재(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공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통장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부적격 당첨자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2 규정 적용)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로 관리가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하며 소명기간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산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 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도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도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시기는 약정일에 2차 계약금이 납부되고, 2차 계약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된 이후부터 형벌, 동벌로 시기를 나누어 전매할 예정이오니 세부 일정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세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 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합니다.

■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각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60% 용자가 가능하나,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이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중도금,잔금)을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이후에도 담보대출로 전환시 정부정책이나, 금융권의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용자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이며** 관할 용자은행은 주택형별, 동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 라 함)의 납부주체는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토지신탁(주) 또는 (주)중산도시개발이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되, 대한토지신탁(주) 및 (주)중산도시개발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자납부 의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자동 승계받는 것으로 하며, 입주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발코니확장 공사 미선택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불가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중도금을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문고(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제도**: 입주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벽지,조명기구,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지장마루(갈레밭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복도 <타일,석재>현관 <타일>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바닥난방, 발코니바닥방수, 발코니바닥 배수 슬리브
벽,천정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장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벽: 단열 + 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천정(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 석재, 재료분리대, 욕조 및 뒷선반(전타입)/상판(108 부부욕실) 하부틀, 코킹,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콘센트,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다용도실 수납일체(시스템 선반 또는 수납장, 상판,액세서리/빨래볼,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아일랜드장,식당서재장(84㎡), 주방팬트리장 (108㎡) 주방TV, 벽타일, 절수패달,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주방가전 일체,렌지후드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수전, 다용도실 수전,팬트리장(도어 및 선반일체),침실불박이장,드레스룸(파우더장 포함),전동식 빨래 건조대	각종 슬리브,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창호	문틀, 각실 출입문의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 도어락	목창호 가름,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실외기실 도어

2. 마이너스옵션 금액

(금액단위: 원 / VAT포함)

주택형 (㎡)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2,000,000	25,000,000	25,000,000	34,000,000

-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신청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하며 또한 무료시공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08.10.29 개정시행)

1. 발코니 확장금액

(금액단위: 원 / VAT포함)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기준)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 금액
		세대당 금액
77.9680	거실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 주방	7,000,000
84.9515A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 드레스룸 + 알파룸	9,000,000
84.9492B	거실 + 침실1 + 침실2 + 주방 + 알파룸	9,000,000
108.924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알파룸	11,000,000

2.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무상시공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새시는 층수 및 향에 의한 풍압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풍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 제시형태와 다르게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동일 동 내의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여부로 발코니 세대 경계벽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 성능이 낮아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조사의 도산,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

청형별 확장위치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은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주방에 난방용 온수분배기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및 유의사항

(금액단위: 원 / VAT포함)

구분		77.9680㎡	84.9515A㎡	84.9492B㎡	108.9242㎡
하이브리드쿡탑	가스 하이브리드	740,000	740,000	740,000	740,000
	인덕션 하이브리드	720,000	720,000	720,000	720,000
전기 오븐	36 리터	450,000	450,000	450,000	450,000
	50 리터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주방 팬트리 (84A타입)			750,000		

- 추가선택품목 공사는 고객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위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에 따른 공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별도 계약서에 준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주택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되고, 「주택법」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양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양대금이 본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상환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중산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계약일 현재 펜타힐즈가 위치한 중산1지구 내 중산지 및 간천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경산시)와 한국농어촌공간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계획 및 주택건설사업이 일부 변경되거나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경산중산제1지구시가지조성사업 내 위치하고 있으며, 경산중산제1지구시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주)중산도시개발로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동측 경부선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혹은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남동측 인근에 가스충전시설(LPG 주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부지 남측 소공원, 동측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중산도시개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며, 추후 모형, CG 등 분양 카달로그 내용과 다르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 학군 및 통합구역과 관련하여 본 단지의 초등학교 통학은 중산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전까지 경산시내 인근학교(성암초등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며, 중·고등학교는 경산시 중·고등학교군내에 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홍보물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달로그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견본주택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목장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77, 84A, 108)외 견본주택 미건립타입(84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강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인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웍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닛,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팬트리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 시, 하부세대의 천정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정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정부분이 변경(위치, 깊이, 형태 등)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되며, 전열교환기 가동시 운전소음이 발생하며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비확장 세대) 또는 다용도실(확장 세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전열교환기를 가동시켜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확장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과 발코니 수전 및 드레인 위치는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안방)가 기본 설치됩니다.
- 무선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내 무선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월패드, 주방TV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천정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덕트가 노출시공될 예정입니다.
- 확장 세대의 경우 다용도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팬분리형 주방후드의 설치로 인해 주방 천정에 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팬가동시 천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전 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고는 거실기준 기준층 천정고 = 2.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됨에 따라 확장 후 평면을 고려하여 설비(급수/급탕/배수/가스배관, 조명, 배선기구류)가 이동 설치될 수 있으며, 확장 전의 설비를 존치하는 경우 누수, 악취,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확장 전 세대를 고려하여 배선기구를 배치할 경우 가구 등과의 간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77타입 주방 아일랜드장 하부, 84A타입 주방 서재장 하부, 84B타입 주방 하부장, 108타입 주방팬트리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가구의 타공이 발생합니다.
- 일부 평형은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주방에 난방용 온수분배기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PL창호 브랜드는 추후 본 공사시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84B 타입의 다용도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덕트가 노출 시공되거나 덕트 은폐를 위한 마감이 시공되어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단지 내부여건

-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독서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맘스라운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사업주체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집기는 일부 시설에 한해 제공되며, 이외의 주민공동시설은 공간만 제공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을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문고)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옥외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건(특히 203동 4호,5호 라인),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202동 1층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독서실, 작은도서관), 204동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스포츠시설)이 위치하여 있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동,203동은 주민공동시설(맘스라운지)이 인접하여 있으며, 입주인 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 보행자통로가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은 30m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204동은 35m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등에 의하여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여 소음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 공원이 인접하여 공원내의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부지에는 저압가스가 공급되어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202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설비등 시설물로 인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위치로 202동 저층 일부세대 및 201동 저층 일부세대에 차량조명으로 인한 간섭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 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으며, 확인이 필요할 경우 건본주택내 비치된 도면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의 남서측 초등학교로 인한 저층세대의 조망 간섭,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편도로 공동주택 부출입구, 노외주차장 진출입교차로, 광장 및 단지보행로 횡단시설 등이 근접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교차로, 횡단보도 제외) 될 수 있어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과 동사이가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시선간섭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위치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건,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구조,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실외기실 창호 및 대피공간 창호는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산시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주민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 공될 수 있습니다.
- 하기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1-3층) 외벽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 혼용 적용될 수 있습니다.(필로티 포함)
 - 주동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및 1층 바닥마감은 석재, 벽마감은 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 기준층 바닥마감은 타일, 벽 마감은 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로비/홀의 주요 바닥 마감은 석재 및 타일로 시공됩니다.(각 실 내부 제외).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옥상에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비상시 인명 등을 구조를 할 수 있는 직경10미터 구조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마감재 리스트는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 예정입니다.

6.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가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정열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 설비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우성설계감리(주)
감리금액	2,233,799,700	502,389,690	288,200,000

■ 분양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원)	보증기간
제01282015-101-0015800호	192,130,1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1.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②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③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④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⑤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⑥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⑦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⑧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⑨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⑩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⑪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⑫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⑭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⑮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⑯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⑰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2)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사용경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②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위탁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위탁자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주)포스코건설	(주)중산도시개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삼성동, 아셈타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경북 경산시 중산동 1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74611-0002979	124411-0072091

■ **신탁계약관련 유의사항**

본 공급대상 주택에 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위탁자 (주)중산도시개발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이라함) 이 체결되어 있음을 청약자는 인지하고 분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1. 본 사업은 (주)중산도시개발이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중산도시개발이고, 대한토지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2. 대한토지신탁(주) 명의로 된 지정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분양대금이 본 사업을 위한 토지비, 공사비등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4.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의 해지, 신탁목적의 달성등으로 신탁이 종료될 경우 대한토지신탁(주)의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 일체(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한다)는 계약 변경등 별도의 조치없이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주)중산도시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5.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관계법령상 각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6.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530번지 / ☎ 053) 795 - 72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